

부천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4. 2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4. 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1999. 4.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세무국장 김인규)

가. 제안이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IMF체제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 등 서민주택건설 지원을 목적

으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세율 0.3%)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 재산세에 대하여는 최저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 반영하기 위해 재산세에 대하여도 최저세율(0.3%) 적용 조문을 신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외국인투자촉진법(1998. 9. 16 법률 제5559호)이 제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세 감면규정 신설

나. 주요골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안 제24조의 3)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일부터 15년 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안 제24조의 4)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분양 주택의 재산세는 최저세율인 0.3%인데 사치성재산의 과표는 몇 %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입니다. 표준액에 기준없이 부과하며 0.3%~7%까지 6단계로 부과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15년 간 세금을 면제해 주는데 추진대상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이 당초 계획인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 대해 15년 간 면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가결

6. 소수의견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28 호
의결년월일	99. 4. 15 (제70회)

제출년월일 : 1999. 4. 2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IMF체제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 등 서민주택건설 지원을 목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세율 0.3%)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 재산세에 대하여는 최저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 반영하기 위해 재산세에 대하여도 최저세율(0.3%) 적용 조문을 신설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외국인투자촉진법(1998. 9. 16 법률 제5559호)이 제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세 감면규정 신설

□ 주요골자**【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안 제24조의3)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일부터 15년 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안 제24조의4)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부천시시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24조의4(외국인·자유지 지원을 위한 감면) 부천시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 간 전액을 면제(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4조의3(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 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 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

(신설)

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24조의4(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부천시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5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